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293-10

2008

INDONESIA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293-10

2008

INDONESIA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머 리 말

국세청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현지국가의 조세제도와 행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책자」를 매년 발간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그 동안 세정간담회 등에서 우리 해외진출기업이 제기한 내용을 반영하여 「세정애로사항별 대처방안」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여 현지 세무 정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10개 국가에 대한 세무안내책자를 새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세무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8년 10월

국제조세관리관 강 성 태

목 차

I . 인도네시아 개관	1
1. 인도네시아 주요경제지표	1
2. 인도네시아 경제 개관	2
3. 우리나라와의 관계 및 진출기업 개황	8
II . 인도네시아 조세제도	9
1. 인도네시아 조세제도의 특징	11
2. 인도네시아 법인세	12
1) 인도네시아 법인세의 기본사항	12
2) 인도네시아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16
3) 인도네시아 내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	17
3. 인도네시아 개인소득세	19
1) 인도네시아 소득세의 기본사항	19
2) 부동산에 대한 과세	22
3) 외국 주재원 급여에 대한 과세	23
4. 인도네시아의 원천징수제도	24
5.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	28
1)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의 기본사항	28
2) 부가가치세 징수구조	30
3)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방법	31
4) 인도네시아의 사치품 매출세	32

6. 기타 인도네시아의 세제	34
7. 인도네시아의 세무조사	35
8.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금우대정책	36
9. 인도네시아의 과세불복제도	37
Ⅲ. 인도네시아 투자 애로사항 및 조력방안	41
1. 조사방법	43
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 지연	43
3. 공무원의 자의적 범집행 문제	46
4. 전문 세무인력 및 세무 인프라 부족	49
Ⅳ. 인도네시아 투자환경	51
1. 인도네시아 경제활동 환경	53
2.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절차	56
3. 인도네시아 외환제도	62
4. 인도네시아 조세개혁	63
(첨부1) 인도네시아 진출 체크리스트	65
(첨부2)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주요내용	66
(첨부3) 지역전문가 및 세정협조자 명단	71
(첨부4) 인도네시아 연락처 명단	72



I. 인도네시아 개관

1. 인도네시아의 주요경제지표
2. 인도네시아의 경제 개관
3. 우리나라와의 관계 및 진출기업 개황

I. 인도네시아 개관



1. 인도네시아의 주요경제지표

국 명	인도네시아 공화국
독립일	1845. 08. 17 * 네덜란드와 일본의 강점에서 독립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 국가 원수 : 대통령 * 현 대통령 : 유도요노 대통령 (04.10.20 취임)
면 적	190만 Km ² (한반도의 9배) * 도 서 수 : 17,508개(무인도 7,133개) * 주요 도서 : 자바, 칼리만탄, 수마트라, 술라웨시, 이리안자야
종 교	회교(87%), 기독교(9%), 가톨릭(3%), 힌두교(2%), 불교(1%)
주요언어	Bahasa Indonesia (인도네시아어) * 문맹율 : 16% * 자바어, 순다어 등 지방어 및 지방사투리 포함 모두 583종
기 후	열대성 몬순기후 * 연평균 최고기온: 25~28℃, 습도: 73~87℃ * 우기(11~3월), 건기(4~10월)
국민총생산	07년 4,891억 달러(06년 3,695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07년 1,947 달러(06년 1,663 달러 대비 17% 증가)
수출/수입	수출 1,139억 달러/수입 744억 달러 (395억 달러 흑자)
화폐단위	Rupiah(1USD= 9,150 Rp 08.3월, 08년 말 9,469Rp까지 하락예상)
인플레이션	07년 6.0% 08년 11.2% 예상
기준금리	07년 8.0%, 08.8월 9.0로 인니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단행
실업률	9.1% (06년 10.3%, 취업인구 1.1억 명)
시 차	서부(자카르타): -2시간, 중부(발리): -1시간, 동부: 0시간
빈곤률	16.6% (06년 17.8%) 절대빈곤인구: 3,700만명

2. 인도네시아의 경제 개관

□ '08 인도네시아 경제

- '07 인도네시아 경제는 6.3% 성장하여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음
 - IMF는 2011 인도네시아 GDP를 5,790억 달러로 전망
'06 GDP 3,642억불에 비해 59%의 경제 성장을 예상
 - * '08 인도네시아 정부는 강력한 경제안정 기조를 전면에 내세움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 유치에 통한 7% 경제 성장을 목표로함
- 그러나 '08 초 곡물가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연초 경제성장목표의 수정이 불가피
 - 인근 태국 등과는 달리 곡물가 및 국제유가 상승이 정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고 대체로 차분하게 악재에 대처
 - 다만 '09년에 인도네시아 대선이 예정되어있어 야당이 현재의 경제 불안을 정치세력화 할 우려

〈인도네시아 경제전망〉

구분	2005	2006	2007	2008			
				연구기관 예상치	정부 목표	'08 상반기 수정치	변동폭
경제성장률	5.5%	5.6%	6.3%	6.5%	7.4%	4.5~5%	-2.4~2.9 %p
인플레이션율	17.1%	6.6%	6.0%	5.0%	6.5%	11.2%	+ 4.7 %p

자료원 : IMF, Kotra 인도네시아 무역관

- 인도네시아는 내수중심 경제로 대미(對美) 수출 둔화에는 둔감할 것으로 예상('08 초 KIET의 경제 전망)되었으나 전 세계적 경기침체의 여파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함

※ 07년 인도네시아 경제 주요 평가

- 유도요노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로 정치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야니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강력한 공공부문개혁을 진행
- 국책금융기관으로서 2번째 규모인 Negara Indonesia 은행의 지분 25.8%를 매각하여 8조1천억 루피아(8억85백만 달러)의 민영화 수익을 올림
- 2007년 외국인 투자는 102억 달러에 육박하여 2006년 59.7억 달러에 비해 42.3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2002년 이후 최대 규모
- 2007.12 재무장관은 천연가스 및 석유 등 광물자원 개발 감소를 막기 위해 광물자원 개발에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정책 발표
- 2007.11 싱가포르 국적의 투자회사가 반독점법을 위반함을 들어 인도네시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기 회사를 제재하였으며 당 투자회사는 자카르타 지역법원에 제소
- 2007.8 일본-인도네시아 FTA를 체결, 관세를 최고 90%까지 감면하고 각종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실무협의를 개시
- 2007.8 싱가포르와 접경지역인 바탐, 카라문, 빈탄 지역이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선정되어 관세와 부가가치세, 사치품 매출세 등이 철폐됨

※ 07 인도네시아 정부의 시장규제 기능에 대한 주요 평가

- 08년에도 인도네시아의 공공기업 민영화정책은 계속되어 30개의 지자체 소유 공영기업을 매각하여 1조5천억 루피아의 매각수익을 기대
- 2007.3 인도네시아 의회는 신투자법을 통과시켜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2007.12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수출입은행을 명실상부한 수출금융회사로 변경하는 초안을 의회에 제출, 수출금융회사로 변경되는 대출 제공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받아 수출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투자환경

- 세계은행이 발표한 비즈니스 활동 용이성 순위에서 인도네시아는 조사 대상 국가 175개 국 중 123위(2006.9)
 - * '06년 135위에서 12계단 상승, 원인은 투자 인허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투자자 보호대책이 마련되는 등 투자 제도 개선에 기인
- '07 부패 척결과 업무효율화를 위한 세관의 개혁시도가 있었으나 오히려 과정적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번문옥례(red-tape)가 가중되는 상황
 - * 그러나, 인도네시아 세관도 'National Single Window'라는 온라인 수출입 통관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무역업체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 TI(국제투명성기구) 기준 180개국 중 143위
- 인도네시아 세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노동법 상 근로자 해고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업 환경 열악
 - * 인도네시아 세법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아 관할 세무 공무원의 협조를 얻지 못하는 경우 사업운영 자체가 곤란
 - * 현행 노동법 상 장기 근속자 해고 시, 해고수당과 서비스 비용 등을 포함한 월 급여의 30배까지 지불
- 법적 보완장치 미흡으로 사업 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준법수준이 낮아 계약 이행 강제에 어려움이 있음
 -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사업개시에 각각 24일, 33일이 소요되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105일 소요되며, 이마저도 정부 담당자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무기한 연장될 수 있는 우려

□ '08 주요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발효 본격화

- 상품협정에 따른 관세철폐·인하조치가 '07.12월부터 적용
- '08년에는 관세 단계인하의 폭이 커지고 대상품목도 증가하여 대 인도네시아 상품수출의 증가가 예측됨
- 법정공휴일 증가와 Cuti Bersama(연차대체휴일)로 근무일수 단축
 - 법정공휴일 14일 외 임시권장 공휴일인 Cuti Bersama 8일 추가로 장기간 업무 중단 상황 발생
- 섬유산업 기계교체 및 운송 등 중장비사업 가속화
 - 정책적으로 낮은 섬유설비 교체시 금융비용 지원 등 간접적 재정지원을 진행
 - * '07 하반기 3억 달러의 대체투자 발생, '08 5억 달러의 대체투자 예상
 - 자동차 및 조선산업에 대한 해외자본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08년에도 해외 중고중장비 수입을 계속 허용할 방침
- 인프라 건설 강화
 - '08 국가주도 인프라 건설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천명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인프라 서밋'이 재개될 전망
 - 국내 유수의 중공업 기업 및 건설사의 참여가 예상됨
- 기타 주요 시장 변화
 - 고가의 이동통신 시장에서 저가의 인터넷 시장으로 IT 성장동력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
 - 고유가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및 석탄/가스 시장의 재활성화 예상

3. 우리나라와의 관계 및 진출기업 개황

□ 우리나라와의 관계

- 2006년과 2007년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반의 상호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은 서로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천명
 - * '07, '08 양국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빈발하는 인도네시아 자연재해 경제협력에 지장 초래
 - *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교역규모는 2007년 기준 98.5억 달러 규모 (수출 30억 달러, 수입 68.5억 달러로 38.5억 달러 적자)

□ 한국과의 투자교류 현황

- '68~'08.3월, 공동투자·증액투자를 포함하여 현지법인이나 지사 등의 설립건수가 2,668여 건으로 전체 투자금액은 2,934,416천 달러에 육박
 - *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 중 대 인도네시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면에서는 3위, 금액 면에서는 7위
- 현지 진출 한국기업은 약 1,050개사 내외로 섬유관련업종이 195개 사
신발·완구업종이 97개 사, 금속·기계업종이 74개 사 등
 - 진출기업의 대다수는 노동집약 사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 업종별 분포〉

분야	업체수	분야	업체수	분야	업체수
섬유	195	통신·컴퓨터	43	종이·목재	24
신발·완구	97	고무·플라스틱	39	금융	17
전기·전자	79	석유화학	37	가구	19
금속·기계	74	건설	36	기타	335
운송·창고	62	출판·인쇄	25	계	1102

자료원 :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길라잡이 국정원 2007



Ⅱ. 인도네시아의 조세제도

1. 인도네시아 조세제도의 특징
2. 인도네시아 법인세
3. 인도네시아 개인소득세
4. 인도네시아의 원천징수제도
5.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세
6. 기타 인도네시아의 세제
7. 인도네시아의 세무조사
8.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금우대정책
9. 인도네시아의 과세불복제도

II. 인도네시아의 조세제도



1. 인도네시아 조세제도의 특징

□ 조세체계

국 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치품 매출세, 인지세, 재산세 해외출국에 대한 출국세 등
지방세	재건축세, 자동차세, 텔레비전세, 유흥세 등
관 세	수출입관세, 담배소비세와 주세는 통관 시에 과세

□ 1995년, 2001년 세법개정的主要内容

- 인도네시아 세법인 1984년 제정 이래 경제성장 및 기업활동의 복잡화에 발맞추어 개정되어 옴

1995년 개정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세 적용 범위를 확대 • 비과세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
2000년 개정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진세 실효성 강화 : 과세구간 세분화(3단계 → 5단계), 과세표준기준 인상 • 개인납세번호 등록 강화 • 부가가치세 환급 신속

□ 투자자 전담 세무서(LTO good-governance framework) 존재

- 인도네시아에는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를 전담하는 세무서가 설치되어 있어 조세관련 행정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편

2. 인도네시아 법인세

1) 인도네시아 법인세의 기본 사항

□ 납세의무자

- 인도네시아 법무부의 설립허가(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설립한 현지 법인은 국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짐
 - * 외국인 직접투자회사의 사업허가는 30년 간 유효하며, 추가 30년 간 사업허가 연장 가능, 외국인의 100% 단독 투자를 허용되나 이 경우 15년 내 최소 1%의 지분양도 의무
 - *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나 석유시추 사업 등은 현지합작이 의무화
- 인도네시아 내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보유한 외국 법인은 인도네시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짐
 - *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의 법인 설립이나 고정사업장 마련은 인정하지만 일정한 금융업을 제외한 업종의 지점 설립은 불허

□ 과세구조

- 세율구조 : 3단계 누진세 제도

연간과세표준	세율
Rp 50,000,000 이하(한화로 약 500만원)	10%
Rp 50,000,000 초과~Rp 100,000,000 이하(한화로 약 1000만원)	15%
Rp 100,000,000 초과(한화로 약 1000만원)	30%

* 과세최저한이나 조세 상한제도는 없음

- 과세기간은 1.1~12.31이나 신청에 따른 변경 가능
- 원칙적으로 세법상 수익인식기준은 **발생주의**
 - * 다만, 소규모 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주의에 의한 수익인식 기준을 선택할 수 있음

□ **과세표준의 계산**

- **사업이익**
 - 인도네시아 세무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에 세무상 익·손금을 가감하는 세무조정을 가하여 계산
 - 손금불산입 대상 지출
 - 종업원에 대한 **현물급여**는 손금불산입, 단 오지결정서에 의한 벽지거주자를 위한 주택제공 비용, 종업원 간식·방호복 등 구매비, 선원 등에 관한 숙소제공비용은 손금인정
 - 사업무관비용(주주, 사용자의 개인목적지출 등)은 손금불산입
 - 생명보험, 병원손해보험과 **재무부의 인가를 없이 회사가 부담하는 연금부담지출금·적립금**은 손금불산입
 - 과소자본회사(부채가 자본의 3배를 초과)에 대해서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결손금**; 향후 5년간 이월 공제 가능, 소급공제는 불가능
- **배당금 수입**
 - 배당금 수취자가 거주자인 경우 **15% 원천징수**로 과세종료, 비거주자는 각국 간 조세협약에 준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20% 원천징수**로 과세종결
 - 인도네시아법인, 소비조합, 국영·공영기업이 다른 인도네시아법인의

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킨 배당소득은 법인세 면세(이중과세 방지)

- * 배당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준하여 처분되고, 배당금을 수령한 법인의 지분율이 25% 이상이며, 배당금을 수령한 법인이 자본출자 외에 “실제 영업활동”을 영위

○ 세무상 자본이득에 관한 과세

- 자본이득도 과세대상 소득으로 인정되며, 자본손실도 공제 가능

※ 자본이득 세율

- 상장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처분이익의 0.1%,
- 기업상장의 경우 기존주주는 기업공개 시점의 주식가치의 0.5%,
- 자산임대수익은 최종 임대료 수입에 대해 10%세율로 과세 종결
-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매각은 조세협약에서 보호되지 않아 5% 원천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 인정과세표준율

- 이하의 업종은 세무당국에 따라 결정되는 인정과세 표준율 적용

업종	인정과세표준율 (매출액기준)	적용세율 (매출액기준)
국내해운회사	4%	1.2%
국내항공회사	6%	1.8%
국제해운 및 항공회사	6%	2.64%
석유·가스채굴용역의 외국기업	15%	-
일정의 상공부 관할의 주재원사무소	인도네시아로의 수출가액의 1%	0.44%

○ 기타 과세표준 산정기준

- 혜택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무형자산은 자산화 가능

- **대손발생**이나 준비금 등의 이월액은 동 자산을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시점이 아니라, 대상자산이 **회수 불능으로 판명**되거나 **폐기된** 시점에 손금 산입
- 접대비 리스트(세무서 지정양식)및 **지출증빙**을 갖춘 접대비로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된** 금액은 손금인정
- 부채 등으로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위장된 경우 해당부채를 자본으로 간주하는 등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

□ **감가상각비 계상**

○ 감가상각비 계상방법

- **내용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유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하여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감가상각

구분	상각률	종류
1분류	50% 정률법/ 25% 정액법	내용연수 4년 이하 자산 예) 사무기기, 컴퓨터, 소형전열기, 전자제품, 휴대전화 등
2분류	25% 정률법/ 12.5% 정액법	내용연수 4년 초과 8년 이하 자산 예)에어컨 선풍기 등 기계장치, 자동차, 컨테이너, 농업용 기계장치 등
3분류	12.5% 정률법/ 6.25% 정액법	내용연수 8년 초과 16년 이하 자산 예) 석유·광물 등 채굴용 기계, 식물 및 염색기계, 운송업종의 도크 등
4분류	10% 정률법/ 5% 정액법	내용연수 20년 초과 예) 건설업종 중장비, 운수업의 기관차 등
건물	5% 정액법 (정률법 불가)	내용연수 20년인 상설건물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유예, 투자세액공제 등 경감조치가 없는 대신 **관대한 감가상각률** 허용

2) 인도네시아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 법인세 신고납부의 흐름

법인세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신고 • 동 신고기한은 인니 국세청장 승인을 얻어 6월까지 연장 가능
법인세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납부 • 동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12월 범위 내에서 기한 연장 및 분납신청 가능
가산세 및 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금 : 납부세액에 대하여 분납 등의 승인 후, 납세자가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가산금 부과 • 무신고가산세 : 100,000Rp(한화로 약 1200원 정도) •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불성실·불완전 신고는 최고 1년의 징역이나 미납세액의 최고 2배에 달하는 추징금부과 • 고의적인 누락신고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최고 4년의 징역이나 미납세액의 최고 4배에 달하는 추징금부과

-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은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과세당국의 조사 착수 전 수정신고가 가능

□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 전년도 법인세액의 1/12를 매월 분할하여 선납 가능
 - * 납부기한은 익월 15일, 환급신고서는 익월 20일까지 제출
 - * 신설법인, 금융회사, 은행 또는 국·공여회사, 복수점포를 가진 소매점(음식점 및 차량판매 제외)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별도의 계산방법 적용
- 결산시 환급법인세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환급지연으로 법인의 현금흐름을 압박할 수 있음

3) 인도네시아 내 고정사업장에 관한 과세

- 인도네시아 내에 고정사업장(PE)을 둔 기업은 인도네시아 국내원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짐
- 고정사업장의 범위
 -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제5조에 고정사업장의 유형을 예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예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건축·건설공사 장소 및 광물 천연자원채굴장을 포함 • 인도네시아에서 보험계약을 하여 보험료를 수취하는 보험회사 • 인도네시아와의 조세조약을 통해서 고정사업장을 설정하는 경우 • 외국 법인을 대리하여 종속적인 형태로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기업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 일반적인 판매촉진, 정보수집, 품질관리 등을 행하는 상사의 주재원 사무소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고정사업장의 납세의무

- 고정사업장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
 - 인도네시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인도네시아 자산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
 - 본점에서 지급하는 사용료, 이자 및 본점으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 고정사업장과 유사한 활동의 대가에 대한 세무문제

- 기업에게 귀속되는 소득 중 기업이 보유한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유사한 종류의 소득은 그 소득이 당해 고정사업장을 통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납세의무를 짐

* 흡인력(Force of Attraction)의 원칙

- 동종의 업무활동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인도네시아 세정당국에 해석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우리 기업이 자의적 법해석에 노출

□ 본사 파견자의 고정사업장 인정여부

- 본사 파견 기술자가 연중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체재하는 경우 동 본사 사원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

- *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 따르면 과세연도 중 183일을 넘는 기간 존재하는 건축·건설이나 컨설턴트 서비스 역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

※ 본사파견자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 세무문제

- 법인세 : 현지 법인이 본사에 지불하는 기술 원조료에 최고 30%의 세율부과 가능
- 개인소득세 : 동 기술자는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간주되어 그 소득에 대해 인도네시아 세법상 개인소득세 납부

- 파견자가 현지 자회사 고용자로서 체재하면 개인소득세는 납부하나 고정사업장 인정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3. 인도네시아 개인소득세

1) 인도네시아 개인소득세의 기본사항

□ 납세의무자

- 거주기준에 의해 납세의무 부과
- 인도네시아 거주자 판단 기준
 - 연속성 여부와 관계없이 년 중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 내에 체류
 - 인도네시아에 체류할 의도로 거주
 -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거주자 판단기준에 관한 다른 정의가 있는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

※ 한-인도네시아 조세협약 제23조 【이중과세의 방지】

- 한-인도네시아 조세협약에 따라 인니에 진출한 한국 거주자는 전체 과세소득에서 인니 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환산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인니에서 납부한 세액을 한국에서 세액공제

□ 개인납세번호(NPWP) 등록의무

-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은 개인에게 납세번호 등록의무 부여

2000.12.31 까지 규정	2001.1.1 이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이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자는 개인세무등록을 면제하고 있었으나 2000년 개정세법에서 예외규정이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세법에서는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개인납세번호를 부여 • 인도네시아에서 납세번호를 발급받은 국민은 약 400만 명 정도 • 확정신고에서는 급여, 자산소득, 해외원천소득 및 그 외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개인소득세 신고의무화 • 2001년부터 자산·부채도 신고의무 항목

□ **세율구조 및 감면·공제제도**

○ 5단계 누진세 제도 (2001.1.1 이후)

연간과세소득	세율
25,000,000 RP 이하(한화로 약 250만원)	5%
25,000,000 RP 초과~50,000,000 RP 이하(한화로 500만원)	10%
50,000,000 RP 초과~100,000,000 RP 이하(한화로 1000만원)	15%
100,000,000 RP 초과~200,000,000 RP 이하(한화로 2000만원)	25%
200,000,000 RP 초과(한화로 2000만원)	35%

- 개인사업자는 기장의무와 부기의무를 지지만 총수입금액600,000,000 Rp(한화 60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기장 의무 등 관련의무 면제

○ 감면 및 공제제도

항 목	금액/연간기준
본인 기초 공제	Rp 2,880,000 (한화로 29만원)
배우자 공제	각 Rp 1,440,000 (한화로 15만원)
부양가족(최대 3인) 공제	각 Rp 1,440,000 (한화로 15만원)
의무관련공제 (소득공제)	Rp 1,296,000 (한화로 14만원) (총소득의 5% 1개월 최대 Rp 108,000)
노후저축 JAMSOSTEK	불입액 전액
연금	Rp 423,000 (한화로 4만원) (총소득의 5% 1개월 최대 Rp 36,000)

※ 사회보장제도 JAMSOSTEK

인도네시아에는 종합적 사회보장제도는 없으나 노동자사회보장제도 존재

- 업무상 상해보험과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고용주 전액부담
(상해보험 보험료는 종업원임금의 0.24~1.74%, 사망보험은 0.3%)
- 노후저축적립은 고용주와 종업원이 각각 3.7%, 2% 부담
- JAMSOSTEK은 부양가족 3명까지 커버하는 의료보험 포함, 단 상기 의료보험은 임의보험으로 해당 종업원이 보다 나은 의료보험이 있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됨(보험료는 기혼자 6%, 미혼자3%)
- 외국인은 JAMSOSTEK에 가입할 의무 면제

□ 과세표준의 계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임금, 상여, 근로보상금, 상금, 사업수입, 이자, 특허권 사용료, 임대료와 및 대손상각액 중 회수된 금액 등 국내 원천의 모든 소득금액
- 근로소득 이외 금액은 부부합산 신고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이 연 120,000,000Rp 이상인 경우 기장된 장부를 근거로 과세, 동 금액 미만의 사업자는 재무부령에 따른 추계결정

○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

-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액에 누진세율로 세액을 산출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과세
- 과세 후 이익분배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

○ 인도네시아 소득세 관련 원천징수

항 목	원천징수세율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인가된 연기금이 지급하는 연금소득	소득세 누진율에 준함
“노동자퇴직금지급관리조직”에 예납된 퇴직금에 대한 이자소득	지급자가 은행: 20%, 지급자가 은행 외:15%
일용근로자 급여 중 日 12,000 Rp를 제외한 금액	15%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직용역대가	7.5%

-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 납부
- 개인납세번호를 부여받아 개인소득세를 합산 신고·납부하며 법인세와 동일하게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 개인소득세도 예납제도 시행, 내용은 법인세와 동일

2) 부동산에 대한 과세

외국인 부동산 소유의 제한

- 외국인은 토지사용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지어진 부동산에 대한 권리만을 행사 가능
- * 외국인이란 인도네시아의 거주허가서(KITAP/5년 유효) 또는 기한부 거주허가서(KITAS/1~2년 유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현지법인은 인도네시아 내국법인이므로 건축권, 토지사용권, 토지개발권 모두 인정
- * 인도네시아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는 100% 외국인 출자로 현지법인을 세워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간접투자

재산세

-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시가표준액의 0.5%를 과세(보유세)

- 그러나 통상 실효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0.1%에 그침
- 자산가액이 1,000,000,000Rp(한화 1억원)를 초과하는 산림 플랜테이션 등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 적용

○ 부동산 취득세

-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개인은 양도실가와 부동산과세적용가액 중 높은 금액의 5%를 취득세로 납부
- 부동산 취득세 납부 전까지는 권리 이전 증서에 공증인이 서명 할 수 없으며, 취득세 감면 규정 존재

<취득세 감면규정>

요 건	감면규정
외교조직, 정부활동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한 양도	면세
직계가족 간 증여	75%경감
합병에 수반되는 토지·건물의 이전	취득세 50% 경감

3) 외국 주재원 급여에 대한 통제

□ 외국인종업원 급여소득 인정과표제도

○ 의의

- 외국인 종업원에 대한 급여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현지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업종별, 국가별, 직책별 급여소득 인정과표에 준하여 소득세 부과
- 석유 및 가스채굴업은 재무장관이 별도로 규정

〈석유 및 가스 채굴업에 관한 인정과표의 예시〉

직 책	USD/월
General Manager	11,275
Manager	9,360
감독자 및 채굴기사	5,830
보조채굴기사	4,510
스텝	3,245

□ 주재원이 본국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과세문제

- 이중과세방지 목적으로 본국에서 과세된 소득은 현지에서 비과세
- 주재원 급여신고 등록 강화
 - 종래에는 해당 주재원에게 미신고 된 본국 급여에 대해서는 현지 법인의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주재원의 소득신고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 2001.1.1 이후 개인세무번호(NPWP) 등록방침이 강화되면서 세무서가 적극적으로 주재원 급여에 대한 신고·등록 요청

4. 인도네시아의 원천징수제도

□ 인도네시아 원천징수제도 개관

- 인도네시아의 징세수단은 주로 원천징수시스템에 의존
-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관련소득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로 종결
- 징수한 원천징수금액은 익월 10일까지 납부, 환급은 20일까지 서류제출

□ 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인도네시아소득세법 PPH §21)

○ 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종업원 급여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회사세무번호’로 원천징수하여 일괄납부

□ 수입 및 특정물품의 거래에 대한 소득세(PPH §22)

- 수입품에 대한 원천징수와 정부 또는 국·공영기업이 거래한 상품에 대한 원천징수 및 특정 법인이 국내에서 판매·인도한 상품에 대한 원천징수로 구분
- 원천징수세율

〈취득세 감면규정〉

구 분	원천징수세율
수입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가격(운임,보험료 포함)과 수입관세 합계 금액의 2.5% • 수입 라이선스가 없을 경우 7.5%
정부, 국·공영기업과의 거래	1.5% (정부 또는 국·공영기업이 징수)
합병으로 인한 토지·건물의 이전	취득세 50% 경감

- 특정산업에 대한 원천세율은 재무부장관이 정함

○ PPH §22의 면세가 적용되는 항목

- 외국영사와 국제조직으로 귀속되는 물품, 과학서적, 종교·기부단체의 증여품, 견본품, 재수출을 위하여 수입된 물품, 수출용 보석으로 가공하기 위한 금지금,

* 원천징수 대상법인이 세무당국에서 원천징수면제증명서를 취득하면 PPH §22의 원천세 납세면제

□ 거주자 간 지불되는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PPH §23)

- 배당, 이자(보증수수료 포함), 임대료·사용료 및 자산운용과 관련한 기타소득, 인도네시아 내에서 수행된 기술 및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
 -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인도네시아 거주자인 경우는 15%,
 - 비거주자인 경우는 20%를 원천징수
 - 배당 등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인도네시아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

구분	배당		이자	사용료	지점세
	일반투자가	실질지배(25%)			
우리나라	15	10	10	15	10

○ 과세표준의 산정: 총액기준

*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의 금리와 중앙은행의 채권 할인액은 기본세율이 아닌 20%의 원천분리과세가 적용됨

○ 인정과세표준

- 일정한 자산소득이나 용역대금의 경우 필요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산 등의 종류에 따라 인정과세표준을 두어 원천세율 적용

항 목		인정 과세표준	기본 세율	실질세율 (총액기준)
토지 및 건물 이외의 자산	차량의 임차료	20 %	15 %	3 %
	차량이외의 자산 임차료	40 %	15 %	6 %
용역 및 서비스료	법률·회계컨설팅, 건설관련 용역, 인테리어, 증권거래서비스, 중개업 인터넷서비스, 인재파견 등	40 %	15 %	6 %
	해충구제, 청소, 정부지출	10 %	15 %	1.5 %

□ 비거주자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PPH §26)

- 비거주자에게 배당, 이자(보증수수료 포함), 임대료·사용료 및 인도네시아 내에서 수행된 기술 및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지불대가의 20%를 원천징수
- 인정과세표준
 -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인정과세표준 적용

항 목		인정 과세표준	기본 세율	실질세율 (총액기준)
해외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보험료	개인피보험자의 보험료	50 %	20 %	10 %
	인도네시아 보험회사의 보험료	10 %	20 %	2 %
	인도네미사 보험사의 재보험료	5 %	20 %	1 %
비거주자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각		25 %	20 %	5 %

□ 분리과세로서의 원천징수(PPH §4)

- 내국법인(지사 등), 고정사업장, 외국기업의 주재원사무소 등은 인도네시아 거주자에게 이하 총지불액 기준의 원천세를 징수·납부할 의무
 - 토지·건물의 임대료는 10%, 정부가 인정한 소규모사업자가 실시하는 건설시공은 2%, 이외의 건설기획 및 감독 대가에 대해서는 4%, 건설감독업자의 보수에는 4%의 세율 적용

※ 주식의 매각

- 상장주식의 매각은 거래가액의 0.1% 원천 분리과세
- 조세협약의 체결국 거주자는 이 원천세가 면제되기도 함
- 비거주자의 비상장 주식매각은 거래가액의 5% 원천분리 과세

5.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세

1)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의 기본사항

□ 개관

- 재화 및 용역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과 특정 사치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사치품 매출세로 구성

□ 납세의무자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SPPKP)이 필요
 - *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사나 기업의 주재원 사무소 등에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비용 처리 불가피
- 다만, 특정 수입품에 과세하는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세무서장을 대행
- 연간 매출액 6억 루피(한화로 6000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면제

□ 과세표준의 산정

- 재화·용역의 공급 가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 수입업자·제조업자에게 차등 적용되는 사치품 매출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 주사업장 총괄납부(3년마다 갱신)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은 본·지점 간 또는 지점 간의 물품 출하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최종목적지 도달 전 중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나 조세를 물납하는 경우

□ **매입세액 공제**

○ **매입세액 공제**

-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해당 제품과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동 제품의 매출세액과 상계
- 세관당국의 관세추징액에 따라 발생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과 상계 가능
- '01.1부터 매입세액은 그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당월신고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해야 함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 사업무관 지출관련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세무조사에서 밝혀진 신고하지 않은 매입
-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불비된 매입세액, 간이 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 참고 : 해외원조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국제기구(IBRD, ADB, OECD)로부터 금융, 재정 및 기술지원을 받는 정부투자사업의 설계감리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하며, 정부가 부담하는 세액은 도급총액에서 원조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당세액으로 함

□ **세율구조**

○ **기본세율은 10%이나 15%~75%범위 내에서 탄력세율로 운영**

- 여행서비스, 배송서비스, 중고차판매: 1%,
- 담배제조업자의 담배판매: 8.4%
- 자가건설: 4%
- 채권매수업(팩토링)에 대해서는 0.5%로 저율과세

○ **영세율과 면세 제도 운영**

〈주요 면세재화와 면세용역〉

면세 재화	면세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원유, 천연가스) • 기초생활품 • 호텔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료 • 화폐, 금괴, 어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보건용역, 인력공급용역 • 인재파견서비스, 호텔업 • 교육, 종교 예술용역 • 은행, 보험, 비은행 금융기관의 금융리스용역 • 주택 등 임대용역 • 유흥세가 부과되는 유흥용역 • 광고를 제외한 방송, 우편 등

○ 한시적 비과세 항목

- 경제정책적 목적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항목 (경제적 필요에 따라 수정·변경 가능)

- VAT 과세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수입
 - * 5년 이내 양도 금지되며 중고장비의 수입시 MASTER LIST 작성 의무화, 국내거래의 경우는 기계와 공장기기 제조업자만 비과세
- 농산품, 포획물, 가축의 사육, 어획물 및 양식품, 종자류
- 전기세(단 6,000W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은 제외)
- 상수도 요금, 루피아 화폐 원료, 은가공품의 원재료

2) 부가가치세 징수 구조 : 매입세액공제제도

○ 세금계산서 기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매입세액공제 제도 채택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계산

$$\text{부가가치세} = \frac{\text{부가가치세율}}{100 + \text{부가가치세율}} \times \text{공급대가(부가가치세포함)}$$

- 재화, 수입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에 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전액 납부**
 - 1개월 단위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공급세액을 초과하는 부가가치세액은 다음 월로 이월하거나 환급됨

※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대리납부자) 제도

- 인도네시아의 부족한 세무행정력을 벌충하기 위한 제도
- 국영기업, 석유·가스 등 생산 분사 계약의 계약자, 광물채굴업의 계약자, 국영·공영은행 등 특정기업체가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
-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자**(일부 국영기업)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고 세무당국에 직접 납부
- **대리징수자**는 징수업무만 분담할 뿐 환급을 결정하는 권한은 없으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면 세무서에 환급 요구

3)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방법

-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을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며 환급은 동월 20일까지 신고세 제출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다음 달로 이월공제하거나 세무서에 환급신청 중 선택가능
 - 환급신청의 경우 환급기간

구 분	소요 시간
특정 적격납세자 환급 신청시	1개월 이내
수출업자 및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VAT Collector)로서 상기 1개월 이내 승인대상 이외의 납세자	2개월 이내
일반적 환급신청자의 신청시	6개월 이내

- 인도네시아 법인이 외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은 외국에 납부한 매입세액을 자진신고(익월 15일)

가산세: 2%

- 적용요건
 -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PPKP)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 PPKP로 등록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발행한 경우
- 이 외에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하거나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본래 적정하게 계산된 세액의 100%를 가산징수

부가가치세 환급

- 환급금 한도액은 매출액의 7%, 신고 후 2월 이내 처리가 원칙

4) 인도네시아의 사치품 매출세

- 10%~75% 범위내의 세율을 사치품의 종류에 따라 부과

〈2007.1.24 개정 사치세율〉

세율	적용 품목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유, 치즈, 요구르트, 버터, 비알코올성 음료, 화장품 ● 스포츠장비, 완구 ● 21인치 이하 TV, 230리터 이하 냉장고, 어린이 장난감 ● 가솔린, 디젤 엔진 등을 탑재한 좌석수 10 이상의 차량 ● 배기량 1500cc미만의 가솔린, 디젤 차량으로서 이륜구동의 세단 스테이션 왜건 이외의 좌석수 10 이하의 차량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0l 이상 냉장고, 난방기, 에어컨, 녹음기, 악기, 세탁기, 21-29인치 TV ● 400m² 이상의 주택, 6,600와트 이상 전력사용 주택, 아파트, ● 위생장비(플라스틱 또는 시멘트제품 제외), 방향제 ● 모피, 양가죽, 조류모 등 이외를 원료로 하는 카펫 류 ● 배기량 1500cc이상 2500cc 이하의 가솔린, 디젤 차량으로서 이륜구동의 세단 스테이션 왜건 이외의 좌석수 10 이하의 차량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수송용이 아닌 선박 ● 골프 및 수상스포츠용구(10% 조건에 불부합), 29-34인치 TV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코올농도 26%이하 주류, 가죽제품, 안경, 금 또는 은 도금장신구, 당구대, 50만 루피(약 5만원) 이상의 신발, 식기세트 및 장식용품, 1,500만 루피(약 150만원) 이상의 가정 및 사무용품 ● 모터보트, 글라이더, 비디오게임기, 34-43인치 TV ● 배기량 2500cc이상 3000cc 이하의 가솔린, 디젤 차량으로서 이륜구동의 세단 스테이션 왜건 이외의 좌석수 10 이하의 차량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피, 동물 털의 수제 카펫, 헬리콥터, 항공기(대중교통용 제외) ● 골프카트, 무기류(정부용 제외) 43인치 이상 TV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기량 250cc이상 500cc이하의 이륜차, 스노우 모빌,비치용 모빌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콜농도 26% 이상 주류, 귀금속, 호화선박(대중교통용 제외) ● 10%~60%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 및 이륜차

○ 사치품 매출세는 위 사치품을 제조·수입하는 공급자에게만 과세하고 소비자에게는 과세하지 않음

6. 기타 인도네시아의 세제

〈기타 인도네시아의 세제〉

세 목	내 용
출국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과 KITAS를 소지하고 1년 이상 인도네시아에 거주한 외국인은 출국시 출국세 납부 • 항공편은 국제선 1인당 1,000,000Rp, 국내선은 20,000Rp 선박은 500,000Rp, 육상교통은 200,000RP • 출국세는 개인소득세의 선지불로 인정. 즉 종업원의 국외출장으로 출국세를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은 고용주 소득세의 선납으로 보아 확정신고시 차감
인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증거력을 발생시키는 각종 계약서, 공정증서, 토지양도증서, 예금증서 등 법에 열거한 문서에 부과 • 3,000Rp 또는 6,000Rp(한화로 약 300원 또는 600원)
증권거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가액의 0.1%에 상당하는 증권거래세 부과
수입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품 관세평가액의 0~170% 자동차(25~80%), 자동차부품(15%), 전기제품(5~15%) 가죽류(10~15%), 알코올 음료(30~170%), 농산물(0~3%) • ASEAN 가입국에 대한 수입관세: 0~5% • 관세의 면세·유예조치 -보세지구: 완제품의 66%, 반제품의 50%이상을 수출하는 보세 지구 내의 기업은 자본설비와 원재료 수입관세 면세 -BINTEK 제도: 완제품이 모두 수출되는 조건으로 원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시켜주는 제도,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는 수출시 환급 • 위반시 제재 -세관 당국은 수입통관 후 2년 간 해당 수입품의 관세품목분류 및 평가액 재결정 가능. -관세 과소납부 시 최대 500% 가산세 가능
기타 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 증여세는 없음 • 교통세(5%), 선박양도세(0.1%), 부동산양도세(5%), 오토바이세 등 • 법인의 자산 재평가차익이 발생한 경우 10% 소득세가 분리과세

7. 인도네시아의 세무조사

*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광범위한 세무조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조사기간도 7일~3월 까지 다양

□ 세무조사의 종류

- 단순 소환조사, 현장 출장조사, 통합조사로 구분
- 환급 신청시, 전년도 대비 납부세액 감소시, 기타 제3자의 탈세제보 등에 따라 종류를 달리함
- 현장 출장조사는 세무서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음

□ 조사방법

- 직접조사와 간접조사로 구분되며 직접조사는 납세자의 사업장, 사무소에서 실시
-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와 그 관련자(은행 공인회계사, 세무 상담원)등은 세무당국의 서면질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부과

□ 조사기간

- 소환조사: 2인의 조사관이 소환일로부터 7일 이내 집행
- 현장 출장조사: 2인의 조사관이 파견 되며 통상 1개월 소요
- 통합조사: 3인 이상의 조사관이 파견되어 조사에 3개월 소요, 세무서 보다 상급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가능
- ※ 부가가치세 조사는 거래징수의 세액보전과 납세자 신뢰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통상 매 분기마다)되나 강도는 낮음

8.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금우대정책

□ 기계류 수입에 대한 VAT, 사치품 매출세 면세 및 관세인하

- 국내에서 생산불가능한 원재료로 5%미만 관세 적용품목은 부가가치세의 100%, 5%이상 관세 적용품목은 50%를 초기 2년 간 면세
- 인도네시아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수입시 100%, 해당 자본재의 소모품은 첫 회계기간 1년 간 전액 면세, 부속품은 50%, 예비품은 자본재 매입가격의 5% 한도 내에서 전액 면세
-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차량·선박 등의 수입시 관세를 최고 5%로 인하, 선박·항공기의 예비부품 관세도 0%로 인하

□ 기업합병 등 구조조정에 관한 세제우대

- 자산재평가차익과 존속회사의 결손금 간 상계 가능, 상계 후 잔여 자산재평가차익은 10%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5년 내 분할납부 가능)
- * ① 구조조정 당사회사가 국세의 미·채납사실이 없으며
- ② 합병·결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이전 적어도 2년 이상 사업 활동에 종사
- ③ 국세청이 인정한 방식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 특정분야 및 지역의 세금우대에 대한 규정(Regulation No.1 /2007)

-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소득세 면제(1999.1.14) 규정 대체

* 과거 정부지정 첨단산업분야 투자소득세 면제

- 정부 지정 22개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투자 시 소득세 최장 8년간 면제
- 지역: 자바 및 발리지역(3년), 기타 지역(5년)
- 요건: ① 종업원 2,000명 이상 고용시(1년),
② 동 투자에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이 20% 이상 지분 확보시(1년)
③ 총투자금액(대지, 건물제외)이 2억불 이상인 경우

○ 세금우대 대상 기업

- 2007년 1월 이후 인도네시아 투자청(BKPM)에서 투자승인을 받은 기업 중, 정부가 지정한 15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세금우대 대상 산업분야
 - 섬유산업: 마 등 섬유업, 방직업, 방적업, 직조업
 - 피혁산업: Nubuck 피혁(일명 세무)
 - 화학산업: 향생제 생산, 비타민 C 추출, 올레핀·아로마 제조
 - 석유시추
 - 철강산업: 선철, 합금생산 등
 - 기계장치산업: 석유 및 가스채취용 기계장치 등
 - 자동차산업: 엔진블록, 크랭크, 실린더 헤드, 인젝션 등 생산
 - 전기전자 : 반도체, CDT, CRT, LCD, 배터리 생산 등

○ 세금우대 내용

- 해당 투자자산을 향후 6년간 양도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투자총액의 30%(6년 간 매년 5%)를 순이익에서 감액
- * 소득공제 여부 결정은 산업생산 개시일 기준으로 하며 현지실사를 통해 세무당국이 결정
- 세무상 조기 감가상각 인정
- 결손금 이월기간을 5년→10년 연장
- 비거주자에 관한 배당소득세를 20%→10%로 경감

9. 인도네시아의 과세불복제도

□ 세무조정과 추가징수

- 신고납부를 근간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납세자는 본인의 세

금을 자가 세무조정을 통해 계산·신고납부

○ 추가 징수(Additional Assessment)

- 회계년도로부터 10년 이내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누락이 있는 경우 경정결정 후 추정 가능
- 추가징수시 해당 추납세에는 100%의 벌금 부과
- 시효기간인 10년 도과 후에도 범죄로 인행 탈세의 경우 추가징수가 가능하며 100% 벌금 외에 48% 벌금(기간이자) 가산

□ 이의제기

○ 부당·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당국에 이의제기 가능

○ 이의제기 대상

- 납세고지, 과세처분, 추가징수,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의 환급청구

○ 이의제기제가 절차

- 과세처분 등이 있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
-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은 이의제기 이후 1년 이내에 결정

* 1년 이내에 결정이 없는 경우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간주

-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세액납부를 지연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없음

○ 전부 또는 일부의 이의신청내용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납부 결정서에 준해 초과 납부한 세금 및 배상금(월 2%, 최고 24개월분)이 지급됨

□ 소(appeals)의 제기 및 소송(suits)

○ 소(Appeals)의 제기

- 이의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법원에 소 제기

* 단, 상소제기 전에 추정금액의 5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 소송의 제기

- 이의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종류의 세금징수문서(경고서, 자산차압명령, 자산경매발표 등 문서), 추납결정서, 당국의 과세통지 변경결정서에 대하여는 국세심판소에 소송 제기 가능

* 인도네시아 조세법원이 조세 관련 소송을 담당

* 소송서류는 인도네시아어로 표기 의무화

* 소송제기가 조세부과처분의 공정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고신청

- 국세심판소의 판결이 원고 또는 피고 측 허위 증언에 기초했다고 생각되거나, 이후의 형사재판에서 증언내용이 무효라고 인정되는 경우
- 국세심판소에서 상소, 소송 중에 발견되지 않았으나 그 판결을 재결정할 수 있는 새롭고 중요한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발견된 경우
- 국세심판소의 판결이 명백히 세무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최고재판소에 국세심판소 결정에 대한 재고를 신청



Ⅲ. 인도네시아 투자 애로사항 및 조력방안

1. 조사방법
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 지연
3. 공무원의 자의적 법집행 문제
4. 전문 세무인력 및 세무 인프라 부족

Ⅲ. 인도네시아 투자 애로사항 및 조력방안



1.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 인도네시아 현지 교민 커뮤니티와 및 국내 검색포털의 관련 카페 (<http://cafe.daum.net/indonesiaworld>)에 가입
- 현지 기업인을 대상으로 세무상 애로사항에 대한 전화설문
 - 대상 기업 리스트 별첨 참조

□ 오프라인 조사

- 동업자 협회를 대상으로 하는 전화조사
 - 세무문제 대처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주된 대상
 - 우리 대사관에 등록된 동업자협회 중 활동이 활발한 2개 단체, 재인니 한국봉제협의회 및 금융기관협의회를 대상으로 함
-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코트라 등 유관기관의 인도네시아 담당자와의 면담
 - * (첨부2) 설문대상 및 면담자 명단별첨

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 지연

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지연의 피해 양상

□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 인도네시아 세법 상 부가가치세 과세기업은 물론 영세율적용 수출기업

도 매입세액을 초과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전액 납부 후 환급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제 운영방식

- 인도네시아는 기업이 스스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 계산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
- 영세율이 적용되어도 일단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한 후 환급

○ 현지 세무서에서 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시점에서 환급시점까지 세액에 대한 이자수입 상당액만큼 비용을 발생시키며 투자자 자금흐름의 경색 초래

* 연매출이 1천만 달러~1억 달러 사이의 봉제업체에서 연매출의 20%~2%에 육박하는 연 200만 달러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지연된 사례, 최장 2년까지 부가가치세가 묶여있었던 사례가 있음

* 2007년 현지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몰야니 재무장관이 미환급세액이 17만 루피아에 달하며 미환급세액의 환급 신속이 정부의 우선처리 항목이라고 시인

□ 법인세 환급지연

○ 법인세 결산시 과오납 환급지연 발생

2) 주요 피해 산업

○ 의류,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이유로 진출한 경공업산업

* 특히 신발산업의 경우 국내 업체 3개가 최근 투자 허가를 득한 상태

○ 인프라 투자 및 금융업 진출기업 등 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자국 세정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삼성과 LG 등 대기업을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우 빠른 편(15일 정도 소요)

* 특정적격자는 1개월, 수출업자 및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와 거래하는 자는 2개월, 그 이외의 자는 6개월로 환급기간을 규정하는 등 기업에 따른 환급기간의 차이를 부가가치세 법제상 인정하고 있는 점도 문제

3) 납세에 대한 환급지연의 원인

□ 인도네시아 전산시스템 열악

- 외국인을 전담하는 세무서 역시 수기(手技)로 세무자료를 관리
- 선 환급 후 검증 시스템이 환급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나 현지 세무서 역량에 비추어 도입 불가

□ 인도네시아 공무원에 대한 내부통제 제도 불비

- 인도네시아 정부 내부통제제도가 불비되어 개별공무원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정책도구 불비

* 정부부패의 문제

- 국제투명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청렴도가 180개 국 중 143위
-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에서 정부 부패 특히 통관 및 조세영역에서의 부패방지에 힘쓰고 있으나 복잡한 구비서류 및 통관절차로 인하여 급행료 등 불법적인 커미션 수수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

4) 납세에 대한 환급지연 문제의 해결방안

□ 인도네시아 세무 전산화 지원

- '94~'97년 국세청의 통합세원관리 시스템 TIS 개통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세무전산화 지원
- 환급금액과 대상자 선정에 있어 수기로 진행하던 업무를 전산화하여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 담당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자료조작 및 누락을 방지하여 부패 가능성을 줄이고 환급업무 신속
- 인도네시아 전자정부추진 프로그램에 따라 세무전산화 추진시 실무단을 파견, 전산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수행

□ 인도네시아 투자자 간의 공동대응 유도

- 급행료 등의 비정상적 방식보다 인도네시아 투자자 공동체 중재하거나 사교모임 등을 통하여 현지 공무원과 인맥을 형성하는 등 비금전적 방식을 사용한 현지화 노력 필요
- 공동 대응과정에서 국세청의 지역전문가 제도 적극 활용
 - 기업 간 협력체에 한국 국세청의 지역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우리기업의 입장을 적극 반영



3. 공무원의 자의적 법집행 문제

1) 세무서의 세법 확대해석 문제 양상

- 경제규모의 팽창을 세법이 따라가지 못하여 세법상 흠결이 많고 이를 세무공무원의 해석에 의존
- 경우에 따라 투자자에게 법적 근거나 관행화 된 선례 없이 불리한 해석을 적용하는 사례 발생

※ '04년 일부 세무조사 사례에서 수출용역에 대해서도 과세

- 수출을 위하여 원재료나 반제품을 수입하고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국내 가공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일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이에 대해 과세한 사례
- 동 사안에서 국제하청 기업의 수출용역 뿐만 아니라 해외수출 당시 매출액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잡아 과세

※ 하청공임에 대한 인도네시아 과세 관행 변경

- 현지의 열악한 세무시스템으로 인해 자국소비 재화의 하청공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과세가 원활하지 않음
- 하청공임에 대한 비과세 관행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하청업체들이 매입, 매출 규모를 성실히 신고하지 않았음
- '02년부터 하청공임에 대한 과세가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한국 진출 기업들의 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크게 증가

2) 주요 피해 산업

- 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가공한 후 제3국에 판매하는 경우(이른바 국제하청)에서 자주 발생
 - * 특히 봉제협회의 경우 200여 개의 회원사 중 60~70%가 국제하청업체로서 수출용역 과세 문제에 취약

3) 자의적 세법해석의 발생원인

- 인도네시아의 모호한 세법규정
 - 모호한 세법규정으로 인하여 세무대행사와 공무원 간 합의를 통해 개별사안에 따라 세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 * 위와 같은 세법 적용은 세무공무원의 개인적 견해표시이며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법적분쟁 발생의 소지가 큼
 - 인도네시아 세법이 다수의 불확정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정부의 재량영역이 증가

- 인도네시아 공무원의 관료주의 팽배 및 투자자에 대한 사적지배 선호경향
 - 대민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사이에 급행료나 수수료 명목으로 투자자에게 금전을 요구
 - 반면 한국기업이 사소한 문제도 금전으로 해결하려는 관행이 있어, 인니 공무원이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

4) 과세요건 확대해석 및 자의적 세법해석에 대한 대응방안

□ 현지 세무서의 자의적인 확대해석에 대한 이의제기

- 세무서의 자의적 확대 해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력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세무문제가 과세쟁점으로 비화되기 전에 사전 차단
 - * 인도네시아는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OECD 뇌물방지 협약'(부패라운드)에 참여하지 않아 자의적 조세법 해석관행을 압박할 정치적 도구가 없음
- 최근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세무관을 파견함으로써 현지 세무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인도네시아 투자회사(PMA) 설립

- 환급지연에 대한 외국인 개인투자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 부가가치세 환급지연은 이의제기의 대상적격이 없어 투자자가 조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
 - 동업자 협회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환급 신속을 건의하는 등 정치적 대응을 진행 중이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음
 - * 2001.1.1 시행 개정세법에서도 부가가치세 환급신속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실효성이 의문시
 - 납세에 대한 환급절차의 운영은 인도네시아 국내 행정의 영역으로 우

리 국세청의 조직적 대처는 사실상 불가능

○ PMA 설립을 통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

- 100% 외국인 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전무, 상무 급 종업원으로 인도네시아 인을 1인 이상 채용 의무화**

- 사업규모가 소규모라 하더라도 법인(PMA) 형태로 설립하여 해당 법인에 고용된 현지인 종업원을 현지 고용·세무관련 분쟁 해결의 통로로 사용

* 현지 세정관행이나 사회문화·풍토 등 비즈니스 노하우를 내부화함으로써 현지세무서와 불필요한 마찰 최소화

□ 우리 기업의 **성실신고 풍토를 조성**

- 현지 기업의 지나친 매출액 축소신고 및 세금회피로 인해 한국 기업인 사회 내 자성의 목소리

- 일부 기업의 불성실신고로 인해 전체 한국 기업이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한국인 사회 내부적 개선 노력 선행 필요

4. 전문 세무인력 및 세무 인프라 부족

1) 현지 기업의 회계·세무인력 부족

○ 대기업 등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법인 내에 회계·세무팀을 운영하지 못하는 실정

○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현지 세법을 교육받은 한국인이 거의 없어 인도네시아 세무당국과의 분쟁에 투입되는 사례는 전무

- 대다수의 한국인 **세무컨설팅업체도 실무는 인도네시아 현지 종업원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현지종업원의 능력과 수완에 의지할 뿐 한국인이 전문지식을 보유한 예는 찾기 어려움

2) 현지 세정정보 유통의 인프라 부족

- 세법 개정사항이 인터넷이나 관련 매체에 반영되는 속도가 느려, 빠르고 정확한 세무정보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따로 발간하는 잡지를 구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3) 세무역량 부족에 따른 한국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

- 최근 인도네시아 세무관 파견으로 현지 기업인의 애로사항 및 현지 세법동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채널 확보
 - 산자관과 세무관이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투자전략과 세무전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자문서비스 제공
 - 세무관은 또한 현지 기업이 세무조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
- 인도네시아의 최신 세무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마련
 - 현지법에 대한 질문사항이나 현지 투자관련 궁금 사항을 인도네시아 지역전문가가 연구·답변하는 고정 채널 마련



IV. 인도네시아 투자환경

1. 인도네시아 경제활동 환경
2.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절차
3. 인도네시아 외환제도
4. 인도네시아 조세개혁

(첨부1) 인도네시아 진출 체크리스트

(첨부2)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주요내용

(첨부3) 지역전문가 및 세정협조자 명단

(첨부4) 인도네시아 연락처 명단

IV. 인도네시아 투자환경



1. 인도네시아 경제활동 환경

□ 정치 환경

- 물야니 재무장관이 공공부문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으나, 부통령인 유습칼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09 임기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유도요노 현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

□ 시장상황

- '07 곡물수요 증가로 인해 경제도 호황을 맞았으나, 경제 구조적 취약점 및 유가변동성 증가에 다소간 조정은 피하기 어려움

□ 환율

- 자유변동 환율제 및 자본의 완전 이동을 허용하고 있어 '09년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및 해외투자자 투자심리 위축 등의 변수에 따라 환율 추가 상승 가능성 상존

□ 정부역할

- 주요 산업의 국유화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바, 민영화와 증시상장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

* 일례 석유와 석탄의 개발 및 가공업을 독점했던 Pertamina社は 석유부산물에 공급부문 외 모든 사업부문을 외주

□ 환경규제

- 최근 정부의 규제가 신설되는 분야로 진출기업들의 주위필요

- * '01 최초로 하수처리시설 설치 강제, '04 수자원법에서 용도에 따라 농업·일반용·공업용수로 나누고 세부관리 지침 작성
- * 농림부는 '99 무분별한 임업자원 채취에 대한 법적 제재 도입,
- * 광물탐사·개발과 관련한 임업자원 훼손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 부여

□ 외국인 투자환경

- '07.3 신투자법 발효, 투자승인 절차 간소화 및 외국인자본 철수제재 완화, 과실송금의 자유 보장, 토지 규제완화 등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으로 '07년 외국인투자의 상당한 증가
 - * 한국의 인니 투자액은 626.8백만 달러로 싱가포르, 영국에 이어 3번째
- 투자 금지 목록(Negative Investment List)

구분	사업영역
외국인 투자 전면 금지	제조업, 주택금융업, 소매업, 박물관업, 토사 채취업, 무기 등 폭발물관련업, 영화 등의 제작 및 배급사업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통신산업(무선 65%, 유선 45%), 보험업(80%), 제약업(75%), 의료산업(65%), 건설업(55%)
외국인의 50% 이상 지분소유 금지	방송 및 멀티미디어·인터넷 산업, 항구·항만 및 교육산업
내·외국 민간자본 투자 전면금지	방송주파수 배분, 위성통신 중계, 비행 관제영역, 마리카나 등 마약류 관련 재배업, 도박사업, 방사능물질 채취사업, 해면동물의 채취 및 사용업

- 외에도 살균제의 원료가 되는 펜타클로로페놀이나 DDT 등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일부 화학약품과 주류제조는 금지되며
- 요식업이나 게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허가받은 일정지역 내에서 현지 호텔 등과 물리적으로 통합되어 있어야 함

○ 합작투자

- 발전사업, 조선업, 원자력 사업이나 수도사업 의료사업 등은 현지합작

의무화

- 현지 합작 인프라 산업에서 인도네시아인의 지분은 5% 이상

※ 인도네시아 주요 외국인 직접투자 사례

- Applied Energy Service (AES 미국): 인도네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PLN과 합작하여 '08 400백만 달러 규모의 바이오 연료 생산공장 착공
- Qatar Investment Authority (카타르 투자청): '07.12 10억 달러 규모의 벤처투자회사 설립을 공표, 카타르 투자청은 수익의 85% 차지
- STX에너지(한국): 빈탄섬에 15억 달러규모의 화석연료 발전시설 건립 발표, '09년 이후 상업 발전 가능
- BridgeStone Tire(일본): 일본의 브리지스톤 타이어는 '07.12 133백만 달러 규모의 타이어 생산 공장 확충 발표
- BlueScope Steel(호주): 바탐 Cilegon지역에 133백만 달러 규모의 코팅철강 생산 공장 확충. '10년 생산을 목표로 현재 건설 진행 중
- Royal Doulton(영국): 식기 및 주방용품 생산업체로 인도네시아 도기 산업에 25백만 달러의 추가 투자 결정, 기존 투자 포함 100백만 달러 투자

○ 금융자유화 및 은행업 지점설립 허가

- WTO 협정에 따라 금융 및 보험시장을 개방하여 외국인100%지분의 은행설립 가능, 지역은행도 외국인 지분 상한을 49%→99%로 인상
- 은행의 이사회나 사장단에 외국인 임명 가능, 단 상기 임원진 중 최소 1인은 인도네시아인으로 임명
- 97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 내 외국계은행의 지점 설립이 불가능했으나, 최근 S&P, Moody's 등에게 신용평가 A등급을 받은 세계 200대 은행에 대해서는 지점 설립 허가

2.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절차

□ 투자채널 : BKPM(인도네시아 투자청)으로 일원화

- 리아우 특별경제구역(SEZ)내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BKPM이 투자 허가권을 가지며, 사업허가는 일반적으로 30년 간 유효
- 외국인 투자에 현지합작을 요구하는 법령이 많은 바,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현지의 지역·문화적 특성이나 구조적 부패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지합작이 선호됨

※ 인도네시아 정부가 선호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예

- ① 대규모 사업, ② 수출산업, ③ 기술이전 계약이 병기된 사업
- ④ 기존 산업의 발달에 이바지 하거나 기존 산업의 원자재와 관련된 사업
- ⑤ JAVA 외 지역에 관한 투자일 경우
- ⑥ 중소기업이나 자생산업 및 1차 산업 발달에 기여하는 사업

□ 지주회사 관련 규제

- 시장 점유율 50%를 초과하는 기업을 2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

※ Temasek Holdings 사건

-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Temasek Holdings는 싱가포르계 Singtel의 대주주로서 상기 Singtel이 인도네시아 최대 휴대폰 생산업체 Telkomsel의 지분 35%를 보유함으로써 Telkomsel을 간접적으로 지배
- Temasek Holdings는 STT라는 싱가포르계 미디어 기업을 통해 Asia mobile holdings에 간접투자 하고 이 Asia mobile holdings가 인도네시아 업계 2위 이동통신업체인 Indosat의 지분 41.9%를 취득
- Temasek Holdings은 간접적 방식으로 인도네시아 이동통신시장의 80%를 차지하는 2개의 기업을 지배, 인도네시아 반독점법 위반으로 각 2.7백만 달러의 벌금과 이동통신업계 지분 50% 초과분에 대한 매각이 강제된 사안

□ 인도네시아 투자 절차

절차	담당기관	내용
외국인 투자승인	인도네시아 투자청 (BKPM)	·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는 인도네시아 투자청에서 총괄 (자본금 1억달러 이상 투자는 대통령 승인사항)
정관작성	공증 사무소	· 유한책임회사의 형태
소재지 등록	관할지역사무소	· 소재증명서 발급
납세등록번호	국세청 지방 세무서	· 납세등록번호(NPWP) 발행 · 부가가치세 과세업자 등록(SPPKP)
자본금 입금	일반은행	· 규제완화조치의 일환으로 최소 투자금액 제한 규정 철폐
회사정관등기	법무부	· 정관 등록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 · 설립등기 및 정관의 관보개제
회사등록	지방 상업국	
개업인가	통상산업부	
외국인 체류·취업허가	이민청/노동부	· 체류허가(KITAS 또는 KITAP) 및 고용허가 발급
영구사업허가	BKPM	
별도 허가	금융·보험(재무부), 은행(중앙은행), 석유·광물(광물·에너지부)	

- 기업의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는 10년간 보유해야 하며 매년 자본금의 20%를 적립
 - *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달하는 점과 상응
- 매년 인도네시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연차보고서 발간 의무화
 - * 단, 회계감사는 은행 등 일부 기업에게만 수감의무 부여
- 감자(減資)가 발생하는 경우 관보에 기재하고 2개의 일간지에 공고하여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

※ 인도네시아 내 회사 설립 시 필요조건

- ① **자본:** 최소자본금은 20백만 Rp로 법무부의 정관등기가 있기 전에 최소한 25%의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함, 주식발행은 수권자본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발행자본의 최소 10% 이상을 은행에 예치
- ② **설립자, 주주:** 최소한 2인 이상의 주주가 필요하며 100%외국인 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당 회사는 향후 15년 최소 1%의 지분양도가 의무화 (인프라 기업의 경우 인도네시아인의 지분은 회소 5%)
- ③ **이사회:** 적어도 1인의 사장과 1인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인프라산업 및 금융업은 2인의 사장과 이사를 요하는 경우도 있음) 현지인과 합작회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에 지분비율을 반영
- ④ **주주의 권리:** 회사의 자산에 부담을 지우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승인할 권리를 지니며, 상기 승인이 필요한 경우 지분비율 기준 3/4이상 주주의 참설 필요
 이사회 경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체지분의 1/10 이상의 주주가경영진의 사기와 중과실을 이유로 집단소송 제기 가능
- ⑤ **정보공개:** 기업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분 상세목록을 보유하여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재무제표를 보고하면서 지분목록도 함께 공개
- ⑥ **법인설립 비용:** 공증비용(수권자본금의 0.01~0.1%), 정관에 대한 인지대
- ⑦ **주식의 종류:** 발행되는 주식의 유형은 제한이 없고, 기명·무기명 증권이 모두 가능하나 외국인 기업의 경우 모든 주식을 기명증권으로 발행 의무화, 우선주도 가능한데 우선주의 거래는 기존 우선주 보유자 사이에서만 가능
- ⑧ **주주총회:**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주총이 소집되어 주요 경제적 의사결정(이익금의 배분)에 대한 통제 실시.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의결은 다수결에 의함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관의 개정, 이사회나 경영진의 해임, 인수·합병 등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 가능

- 투자자는 정상조업 개시 수 BKPM에 공장건설 상황보고(연 2회) 및 생산상황보고(12월 말, 연 1회) 의무화

□ 건물 및 부동산 취득 절차

○ 사업용 건물 취득 절차

- 사업용 부지의 소유권 취득하고 관할 지역사무소에서 소재지증명서 발급
- 해당 지역사무소의 공공사업부에서 건축허가 요청

* 허가구비서류: 소재지증명서, 신청자의 신원증명서, 회사의 정관

- BKPM(인도네시아 투자청)이 건축을 허가하면, BKPM은 해당 부동산 투자의 목적, 투자지역, 예상사용처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인도네시아 국토부에 송부

- 국토부(BPN)의 승인

* 전국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토지개발 및 건축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 건축업에서 고려할 사항

- 건축허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BKPM의 투자허가이며, 특히 바탐 지역 등 리아우 SEZ에서는 토지를 80년간 사용할 권리가 인정됨
- 국토부의 건축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음
- 호텔업, 플렌테이션, 주택건축업자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건축사업의 경우 지역정부에서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이용가능성 및 적합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 건축허가의 경우 해당기업과 정부관계자의 친소관계에 따라 허가기간과 과정의 곤란도 및 복잡도가 상이하나, 대개 6개월 정도 소요
- 다수 부처의 관할이 경합하는 복합사업의 경우 절차장 중복을 제거하기 위하여 환경영향관리위원회가 통합관리
 - 사업허가에 관한 1차 심사(12일 소요)에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면
 - 신청인은 영향평가서, 참조자료, 향후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을 추가로 제출하고 이에 관한 2차 심사(45일 소요)에 통과할 경우 사업을 허가

○ 부동산 취득

- 외국인은 토지에 대한 배태적 소유권(freehold)를 취득할 수 없으며 법에 열거된 제한된 종류의 권리만 행사 가능

※ 인도네시아 토지와 관련한 권리 중 외국인투자와 밀접한 권리들

- **건설권**: 국가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고 동 건물을 소유할 권리유효기간은 80년 이며 이전성이 있고 부동산담보대출 가능
- **토지경작권(right to cultivate)**: 농·수산업 및 목축업에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유효기간은 95년으로 부동산담보대출 가능. 92년 경작권에 한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의 지위가 동일하게 규정되었으며(특히 은행 대출 심사 시), 100% 외국인 소유 기업이 현지합작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대출의 만기 및 신규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률 개정
- **토지사용권**: 국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유효기간은 75년이며 이전성이 없고 담보대출도 불가능
- **임대권**: 토지나 건축물을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함, 계약기간 설정은 자유이며 담보대출은 불가능
- **Strata-title**: 호주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인정되는 소유권 개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소유권에 대비되는 각 개인의 소유권으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5~30년 간 유효한 주거용 재산을 구입해야 함(최근 50년으로 연장)

* 토지관련 법제도와 권리가 너무 복잡하여, 외국인이 해당토지에 대한 적절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법적성격을 사전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함

- World Bank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데 42일이 소요

※ 거주자가 취득 할 수 있는 부동산

- 1) 국내기업의 해외 사업 활동 및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사무실, 공장, 창고, 전시장 등 현지법인, 해외지사 등에 근무하는 자 또는 해외연수를 위해 파견된 자의 주거용 주택
- 2)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거나 주요자산으로 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것으로서
 - ①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
 - ② 국내기업의 해외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무역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부동산
 - ③ 농업이나 목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경작용 부동산으로써 산지·초지·임야 등
 - ④ 해외건설업자 또는 종합무역상사가 토지·건물 등 외국부동산을 임대·분양하거나 개발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부동산
 - ⑤ 종합 무역상사가 해외 자산운용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잔액기준으로 전년도 수출입실적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최고 미화 1억불 이내에서 구입하는 부동산
 - ⑥ 거주자가 해외에서 병원·학교 및 종교기관 설립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
 - ⑦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미화 30만불 이내의 주거용 주택

• '98. 7 정부는 토지 등 부동산의 거래에 대해 5%의 거래세 부과

* 부동산거래 관련 비용: 거래세 외에 공증비용으로 매각가치의 1~2%, 이 외에 거래비용을 합하면 매각가액의 11%에 달함

• '07 신투자법의 토지규제 완화

; 토지사용권을 25년→75년, 건축권은 50년→80년, 토지경작권은 60년→95년으로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완화

- 법인의 토지 소유에는 상한선 존재

* '99 토지소유 상한제를 철폐하였으나 한 개인이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기의 규제를 유지

<기업지배구조가 독점적인 기업에 대한 토지소유 상한>

업종	상한선
리조트, 호텔	2,000,000m ²
주거용, 산업용 건물	4,000,000m ²
사탕수수 작물재배	600,000,000m ²
사탕수수 외 작물재배	200,000,000m ²
자바 지역 내 농업	1,000,000,000m ²
자바 지역 외 농업	200,000,000m ²

- 인도네시아 금융위기 ('97) 이후 IMF의 권고에 따라 시장경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토지 관련 규제정비

- '98 이후 주택보유자는 본인이 보유한 주택이 장착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음

○ 설비투자

- 중고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허가와 함께 선적전검사(SG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본재로 수입되는 중고설비는 Master list를 적성하여 부가세 및 관세 면세 가능

- 고장자산 투자의 30% 상당액을 6년에 걸쳐 5% 씩 과세소득에서 공제

3. 인도네시아 외환제도

□ 내부투자

- 외환통제가 없어 투자자들의 자금 반출입 자유 보장, 단 환율변화에 따른 환차익은 합작 투자의 회계장부에 미실현이익으로 인식

* 환차익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환차익은 배당의 원천이 될 수 없으나, 청산시는 송금자산의 일부를 구성

- 외국인 투자자의 내국 투자가 승인되면 총 투자액은 루피아로 환산하여 결정됨

□ 현금계정

- 회계단위는 루피아가 원칙이나 외화계약도 인정, 인도네시아정부는 복수통화바스켓에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연동
- 주요 교역통화의 현금계정 설치는 외국환 취급은행에서 가능, 외국통화의 현금계정, 정기예금계정, 저축계정 등은 거주자, 회사, 기타 대표사무소, 지사 등에게만 인정

□ 자본 및 이익의 자유로운 송금

-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과실송금의 자유)
 - 이익배당금, 청산소득, 급여, 대여금의 이자 및 원금, 로열티 등 인도네시아 투자로 인한 소득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 태환불능에 대한 보장
 - 외국인자본투자법(Foreign Capital Investment Law)에서 모든 주요 통화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유로이 교환될 수 있다고 규정

4. 인도네시아 조세개혁

□ 인도네시아 조세개혁의 연혁

- '06.8 인도네시아는 세법에 대한 전반적 개정안을 상정
 - 조세절차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 및 사치세법 개정안으로 구성
 - * 조세행정상의 번문옥례 제거 및 신고납부로의 전환을 통해 세율 인하 및 납세순응도 제고를 목적으로 함

- '08.1 현재 조세절차법만 의회를 통과한 상황

○ 투자자 전담세무서(LTO) 설치 및 확대개편

- '02 인도네시아 투자자의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세무서(Large Taxpayer Office) 설치

* 광역세무서에서는 외국인 투자시 행정절차를 빠르고 쉽게 개선하며, 납세절차 및 세무감사를 간소화·최적화

- '04 광역세무서는 "LTO Good-governance framework"로 개편되어 국외이주자와 외국인에 대한 세무행정을 전담

□ 법인세 및 소득세 분야 조세개혁

○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 인하

- '07년 상정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1,000만 루피아 이상에 대해 적용되던 30%의 최고세율을 '07년 28%, '10년 25%로 축소할 예정

- 함께 상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법 최고세율을 '07년 33%, '10년 30%로 축소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통과 일정이 모호해 짐에 따라 현행 세율 유지 중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순응 확보(법인세)

- 신고서 서식이 너무 많고 복잡하여 조세순응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중소기업에 관한 세원관리 강화

- 중소기업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불만센터, 핫라인, 전자신고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납세비용 절감

○ 개인 납세등록번호 등록의무를 강화(소득세)

- '00 인도네시아 정부는 과세 베이스를 넓히기 위해 국외이주자 포함 모든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원칙을 강화

* '00 이전에는 140만 명(인구대비 0.7%)만 납세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07년 400만 명(인구대비 약 2%)으로 납세등록번호 보유자 증가

(첨부 1) 인도네시아 진출 체크리스트

※ World Bank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 이하의 12개 절차를 밟아야 함

- (1) 인도네시아 법무부에서 기업 표준 정관 수령 및 상호 혹은 회사명에 관한 허가증 수령(7일 내 처리, 비용 385,000 Rp)
- (2) 공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설립인은 정관 작성
(7일 내 처리, 비용 10,000,000 Rp)
- (3) 지역사무소에서 회사의 소재지 증명서 수령 (10일 내 처리, 비용 없음)
- (4) 납세자 등록번호(NPWP) 및 부가가치세 납세번호(SPPKP) 수령
(14일 내 처리, 비용 없음)
- (5) 자본금을 회사 명의로 은행에 예치(4일 내 처리, 비용 없음)
- (6) Non-tax state revenue 비용을 재무부에 납부
(1일 내 처리, 비용 200,000 Rp)
- (7) 법무부로부터 정관에 관한 승인 취득
(14~30일 내 처리, 비용 1,100,000 Rp)
- (8) 통상부의 개업인가 취득
(15일 이내 처리, 비용 500,000 Rp)
- (9) 정관과 회사 설립에 관한 등록사실을 공증과 함께 관보에 수록
(2일 이내 처리, 비용 850,000 Rp)
- (10) SIUP(영구사업허가) 수령 (14일 이내 처리, 비용 40,000 Rp)
- (11) 이민청 및 노동부에 체류 및 고용허가 등록
(14일 이내 처리, 비용 없음)
- (12) 근로자 사회보장 프로그램 가입(7일 이내 처리, 비용 없음)

출처 : World Bank, 「Country Commerce 2008」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Ltd. 2008

(첨부 2)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주요내용

1. 대상조세 및 발효일

○ 발효일자: 1989. 5. 3

○ 대상조세

-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인도네시아: 소득세, 법인세, 이자·배당·사용료에 관한 조세

2. 법인격: 개인, 법인 및 조세목적상 실체로 취급되는 기타 법인격체

3. 이중거주자의 구분기준

- 개인: ① 항구적 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

④ 상호합의 순으로 거주 해당국을 결정

- 법인: 실질적 관리 장소에 의거 거주자 해당국을 결정

4. 고정사업장의 범위

- 종속대리인으로 보는 것은 계약체결권한을 가진 대리인이거나 재고보유 대리인일 경우

- 건설, 설비 또는 조합공사 및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

5. 부동산 소득: 부동산 또는 자연자원의 소재지국이 과세권 보유

6. 사업소득: 과세권은 사업소득이 귀속되는 국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세소득의 범위는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으로 함

7. 국제운수소득: 일방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항소득은 타방 계약 국에서 면세됨

8. 배당소득

○ 배당의 정의

- 주식,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배당분배법인의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배당에 관한 제한세율: 지배관계법인(25% 이상의 지배)은 10% 적용

9. 이자소득

○ 이자의 정의

- 담보의 유무와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채권 특히 국·공채, 그 프리미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소득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취급하는 소득
- 증권·채권사에 부수되는 할증금, 상금, 연봉판매에 대한 이자

○ 이자발생 원천지국 구분

- 일방체약국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동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으로 간주
- 고정 사업장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채무에 대한 이자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내의 원천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으로 간주

○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10%

10. 사용료소득

○ 사용료의 정의

- 영화필름 또는 텔레비전이나 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상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실용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 산업상, 상업상, 학술상의 설비나 산업상, 상업상,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권
- 모든 기술, 경영 또는 자문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피고용인 및 독립적 인적용역의 경우는 제외)
- 사용료소득 발생 원천지국
 - 사용료의 지급인이 정부,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거주자인 경우 동 체약국
 - 사용료 지급인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료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경우는 고정사업장, 소정사업장 시설의 소재체약국
- 사용료 소득에 관한 제한세율 : 15%

11. 양도소득

- 부동산 양도소득은 재산 조재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 및 소정사업장에 부속되는 동산의 양도소득은 고정사업장 소재 체약국에서 과세권을 가짐
-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은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 과세

12. 독립적 인적용역

- 독립적 인적용역의 과세원칙 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인적 용역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함
- 다만, 타방체약국 내의 원천소득은 일정요건의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는 경우는 90일 초과하여 체재하거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타방체약국에서과세

13. 종속적 인적용역

-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함, 단 타방체약국 내의 원천소득은 일정요건의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과세
- 타방체약국 원천소득에 대한 타방체약국의 면세요건은 인적용역제공자

가 동 타방 체약국에 193일 이상 체재하고,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 또는 그를 대리하여 지급되고,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 내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아야 함

- 국제 운항하는 선박, 항공기의 정규승무원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됨

14. 연예인 및 체육인

- 연예활동, 체육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관한 과세권은 동 연예활동 등의 수행지국이 가짐
- 다만, 양국 정부 간에 합의된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계획에 따라서 개인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용역수입지국에서 면세

15. 퇴직연금

- 퇴직연금 및 보험연금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단, 거주자나 고장사업장에 의한 연금은 원천지국도 과세가능

16. 정부용역

- 정부용역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방체약국등이 이윤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된 인적용역에 대하여 지급된 봉급 등에는 적용하지 않음

17. 교직자

- 개인으로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하는 경우 이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강의 또는 연구기간이 2년 이내일 경우에 한하여 원천지국에서 면세
- 조사연구활동이 측정인의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원천지국에서 과세

18. 학생 및 훈련생: 생계유지, 교육, 훈련목적으로 수취하는 금액은 면세

19. 기타소득

- 양국조세조약 상 규정되어있지 않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 기타소득은 거주지 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이외에는 사례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의 규정을 적용

20. 이중과세 방지

- 외국납부세액제도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함
- 경제개발장려와 관련되는 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배당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

21. 무차별 :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과 동일한 조세상의 부담을 가짐

22. 상호합의절차

- 양국의 국민은 조세조약규정에 어긋나는 과세에 대하여 양국의 권한 있는 조세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동 이의신청은 대상이 되는 과세상 조치의 최초의 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함
-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위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스스로 적합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당국 간 상호합의에 의하여 동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함

(첨부 3) 지역전문가 및 세정협조자 명단

○ 인도네시아 국세청 세정협조자 명단

이름	근무처	연락처
Mr. Djonifar Abdul Fatah	법규분야 과장 (상호합의 담당자)	Tel: (021) 573-6094 Fax: (021) 573-6094 Email: dgt@pajak.go.id
Ms. Dwi Astuti	법무심사분야 사무관 (SGATAR 회의참석)	Tel: (021) 5250-1609 (3526) Fax: (021) 5262 920 Email: dwi.astut1@pajak.go.id
Mr. Kismantoro Petrus	일반행정분야 사무관 (SGATAR 회의참석)	Tel: (021) 573-6094 Fax: (021) 573-6094 Email: dgt@pajak.go.id
Mr. Agus Hudiyo	조사분야 사무관 (KOICA 교육참석)	Tel: (021) 525-1609 Fax: (021) 526-5915 Email: agus.hudiyo@pajak.go.id
Mr. Djalinator Sidjabat	법규분야 과장 (KOICA 교육참석)	Tel: (021) 522-5132 Fax: (021) 573-2062 Email: djalintar.sidjabat@pajak.go.id

○ 인도네시아 지역전문가모임 명단

이름	직책	근무처	연락처
박재형	서기관 (팀장)	본청 국제협력	Tel: 02-397-1412 Email: park1968@nts.go.kr
손채령	사무관	본청 전자세원	Tel: 02-397-2047 Email: west1114@nts.go.kr
남용훈	조사관	본청 국제협력	Tel: 02-397-1414 Email: yhnam4655@nts.go.kr
김우성	조사관	대전청 법무과	Tel: 042-620-3354 Email: tubugji@naver.com
김점동	조사관	서울청 조사국	Tel: 02-397-2114 Email: kjb2345@nts.go.kr
윤영준	조사관	구미세무서	Tel: 054-468-4692 Email: bonza9304@nts.go.kr
이원희	조사관	동청주세무서	Tel: 042-229-4212 Email: lwh4444@nts.go.kr

(첨부 4) 인도네시아 연락처 명단

이름	근무처	연락처
김동일	주인니 한국대사관 세무관	Tel (HP) 0813-8480-1631
김남규	주인니 한국대사관 산자관	Tel : (021) 520-1915
김경곤	재인니 한국봉제협회	Tel : (021) 790-2721 Fax : -
김현철	코트라 인도네시아 지사	Tel : (021) 572-1522 Fax : 572-2187
문영준	LG 상사	Tel : (021) 515-1705 Fax : -
최태진	(주)코오롱	Tel : (025) 428-2222 Fax : -
정태원	삼성물산	Tel : (021)572-8182 Fax : -
이상우	(주)대상 빼떼미원	Tel : (021) 4786-3124 Fax : -
외환은행	-	Tel : (021) 574-1030 Fax : -
우리은행	-	Tel : (021) 515-1919 Fax : -
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장 송은호	Tel : (021) 521-2515 Fax : (021) 521-2486
컨설팅 21	현지 세무대행업체	Tel : (021) 520-0088 Fax : -

본 책자는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로 진출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의 조세법 및 관련 법령을 2008.1.1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 적용 등은 반드시 인도네시아 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 조문을 확인한 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책자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더욱 좋은 자료를 만드는데 활용하겠습니다.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번호 : (02)397-1423~1424

팩스번호 : (02)723-9976

원고작성 및 편집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송 성 권
	행정사무관	이 선 주
	세무조사관	김 헌 국
서울청	서대문세무서 행정사무관	손 채 령 (2287-4240)
인쇄처 : (주)아트팰리스 T.(02)2277-1088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397-1423)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